

마약법 및 마약사용시 제도적 문제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약제과

조 성 자

1. 마약류란?

마약법에서 정한 마약, 대마관리법에서 정한 대마로서 비교적 쉽게 강한 의존성, 중독성, 탐의성을 나타내고 그 결과로서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약제의 총칭

2.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앵속, 아편, 및 코카엽
 - ② 앵속, 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 ③ 제 1호 및 제 2호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학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 ④ 제 1호 내지 제 3호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것. 다만 타약품과 혼합되어 제 1호 내지 제 3호에 열거된 것의 새로 제제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정 1989. 4. 1. 제 4122호)

3. 마약의 종류

- 천연마약 - 앵속, 아편, 코카엽(3종)
- 천연마약의 알카로이드 추출물 -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코카인, 디히드로코데인 등
- 합성마약 - 메사돈, 페치딘, 프로폭시펜, 페나조신, 훈타닐 등
- 한외마약 - 마약을 함유하고 있으나 타약품과 혼합하여 새 제제가 불가능하며,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

4. 국내생산 의료용마약

- 염산페치딘 50mg/ml 1ml×10A/갑, 50A/갑
- 염산모르핀 10mg/ml 1ml×10A/갑
- 황산모르핀 10mg/정, 30mg/정 100정/병
- 인산코데인 20mg/정 100정/병
- 인산코데인 5g/병
- 인산코데인 10mg/캡슐 100캡슐/병

-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 60mg/정 100정/병
- 펜타닐 2.5mg/매, 5mg/매 5매/갑
- 구연산수페타닐 0.075mg/ml 2ml×10A/갑
- 구연산펜타닐 0.0785mg/ml 2ml×10A/갑
- 염산코카인 1g/병

5. 마약취급자(법 제3조)

- ⑦ 마약관리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의 조제, 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자를 말한다.
- ⑩ 마약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로서 사람 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의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하여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
- ※ 마약관리자(종합병원, 병원 또는 치과병원이나 4인 이상의 마약 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 마약취급의료업자 면허없이 마약을 취급할 수 있다.
- 면허등록번호, 면허연월일 등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의 신고번호, 개설연월일로 갈음

6. 마약취급의 제한(법 제5조)

- ① 마약취급자는 그 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을 소지, 소유, 조제, 투약, 마약취급학술연구자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학술연구,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마약취급자가 업무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을 투약등 행위를 한때
- * 벌 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 행정처분 : 1차 취급업무정지 6월, 2차 면허취소
- ④ 마약취급자는 변질·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처분 : 1차 15일, 2차 1월, 3차 3월 취급업무정지

7. 판매서, 구입서(법 제13조)

- ① 마약취급자가 다른 마약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 마약취급자가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양도·양수한 때
-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처분 : 1차 1월, 2차 2월, 3차 3월 취급업무정지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마약취급자가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1차 1월, 2차 2월, 3차 3월 취급업무정지

8. 기록의 정비(법 제14조)

마약 취급자는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제조, 제제, 소분, 조제, 투약,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 수량, 연월일, 상대자의 주소, 성명 및 상대자가 마약 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별과 면허증등록번호를 이에 기록하여야 한다.

9. 사고마약의 처리(법 제15조)

마약취급자는 그 소지하는 마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고마약발생상황보 고(별지 제7호서식)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면허청(보건소)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해로 인한 상실

② 분실 또는 도난

③ 변질 또는 파손

- 마약취급자가 소지하는 마약에 대하여 도난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때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1차 1월, 2차 3월, 3차 6월 취급업무정지

10. 자격상실자의 마약처분(법 제16조)

① 마약취급자가 폐업, 사직, 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취급자 · 상속인 · 후견인 · 청산인 합병후 존속 한 때 보유하고 있는 마약의 양도 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약양도승인신청서를 해당 면허청에 제출하여 당해 면허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마약의 저장(법 제17조)

마약취급자는 그 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을 타 약품과 구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 마약의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마약의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① 마약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사무소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령 제11조)

② 일반인이 쉽게 발견 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 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으로 잠금장치가된 철제 금고에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규칙 제9조) 의원에서 자주 분실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마약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

* 벌 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마약취급자가 마약을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때

*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1월, 3차 2월 취급업무정지

- 마약취급자가 마약을 이중으로 잠금장치가된 철제금고 외의 다른시설에 보관한 때

* 행정처분: 1차 1월, 2차 2월, 3차 3월 취급업무정지

12. 무봉함마약(법 제19조)

마약취급자는 봉함증지로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을 수수하지 못한다.

- 마약취급자가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를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을 양도한 때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1차 6월 취급업무정지, 2차 면허취소

13. 투약의 기록(법 제37조)

① 마약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아하기 위하여 교부한 환자의 주소, 성명, 난령, 성별, 병명, 주요증상, 투약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마약의 품명, 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 약품과 구별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마약취급자가 소지한 마약의 재고가 마약수불장부와 차이가 있을 때

* 행정처분: 1차 3월, 2차 1월, 3차 3월 취급업무정지

- 마약취급자가 마약수불장부에 마약의 수불에 관한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아니한 때

* 행정처분: 1차 15일, 2차 1월, 3월 취급업무정지

[별지 제5호 서식]

마약취급의료업자 마약수불대장												
연번	일자	구입		사용							재고량	취급자 (서 또는 인)
		수량	구입처	주소	성명	연령	성별	병명	주요증상	투약량		

- 마약취급자가 마약수불대장을 2년간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 행정처분: 1차 15일, 2차 1월, 3차 3월 취급업무정지

14. 처방전의 기재(법 제38조)

- ① 마약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할 때에는 당해 처방전의 발부자의 주소, 업무소소재지, 명칭, 의료업면허자격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또 처방을 받은 환자의 주소, 성명, 성별, 연령, 병명 및 교부년월일을 기입하고 그 기록을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한 마약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고 마약을 직접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방전에 허위 또는 미기재 한 때
 -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처분: 1차 15일, 2차 1월, 3차 3월 취급업무정지

15. 마약사용의 금지(법 제48조)

마약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의 중독자에 대하여 그 중독증상을 완화하거나 또는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 * 벌 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처분: 1차 15일, 2차 1월, 3차 3월 취급업무정지

16. 마약중독자의 보고(법 제49조)

의료인은 환자가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진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독자의 주소, 성명, 연령, 성별 및 중독된 마약의 품명을 기재한 마약중독자 보고(별지 제21호 서식)는 시·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 중독자를 치료한 때 또는 그 사망을 진단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처분: 1차 15일, 2차 1월, 3차 3월 취급업무정지

17. 마약사용의 제도적 문제점

1) 복잡한 관리

① 입고 절차

② 관리 절차

③ 잔여분 반납처리

④ 파손품 처리

⑤ 폐기 절차

→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절차의 간소화 방안 강구 요망

2) 마약 수가 현실화

3) 적은 함량의 추가 생산 요구됨

- 4) 주사제 각각의 유효기간 명시
→ 보수교육 신설하여 교육할 필요성 요구됨
- 5) 교육의 부재
- 6) 감시기관에서 감시
실 사용자: 의사, 간호사, 약사사시 일관성 부재

<참 고>

약사법전: 마약법

마약법 해설: 서울특별시 의약과 권오균

고대안암병원 약제과